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
목차	2
민원서식	4
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	4
첨부파일(1)	4

민원사무처리

민원서식

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

작성일 2020.09.15 10:46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22

첨부파일(1)  09_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.hwp 51 hit/74.0 K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
1. 사무안내

상속, 양도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(영업소의 명칭, 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음)

2. 신청대상자: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

3. 신청방법: 방문

4. 관련법규

-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

5. 수수료: 9,300원

6. 구비서류:

- 영업허가증,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
-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 - 양도의 경우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 - 상속의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-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
- 위생교육 수료증(양수인)
- 건강진단결과서(양수인)
-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
(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)
- 화재배상책임보험, 소방안전교육이수증(다중이용업소 해당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:

- 영업신고: 즉시(3시간이내)
- 영업허가 및 등록: 3일 / 민원봉사과(☎ 430-3425)

목록

GANGJIN

Web Contents

